

비상경제장관회의

24-7-4

(공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2024. 4. 15.

관 계 부 처 합 동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요약)

1 추진배경

- (현황)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 심화
 - * 지방의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 초래
- (그간 대응) 정부는 그간 인구감소지역 지정('21.10월) 및 특별법 제정('23.6월)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
- (3종 프로젝트 마련) 이러한 지원 기반 하에 '24.1월에는 실질적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주요내용】

- ❶ (생활인구)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구확대에 착안
→ '세컨드 홈' 취득시 세제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
- ❷ (방문인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광업 활성화 필요
→ 지정절차 · 지정규모 등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 ❸ (정주인구) 지역의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등 지자체의 인력유입 요구 증대
→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퀘터 확대로 외국인 정착 지원 추진

- (프로젝트 구체화) 프로젝트 본격추진을 위해 지원요건 · 적용 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실행방안 마련

2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 ❶ (생활인구)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해 '세컨드 홈' 활성화

- ❷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中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 ·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

*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② (주택요건) 특례지역 주택 中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이하 주택으로서 '24.1.4일('24년 경정 발표시점) 이후 취득분

③ (소유주요건)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년 과세분부터 적용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4.4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4.6월)

② (방문인구)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7개 시·군,
10개 사업(사업비 1.4조원 규모) 우선지정 추진(관광진흥법 개정 필요)

① (지정요건) 인구감소지역 内 관광단지 지정규모 축소($50\text{만m}^2 \rightarrow 5\text{만}\sim 30\text{만m}^2$),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3 \rightarrow 2$ 종류 이상)

② (지정권자)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도시자에서 시장·군수로 이양

③ (적용지역) 인구감소지역 中 시·군 지역

④ (적용혜택)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 더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혜택** 추가 지원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

**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

→ '25.1분기 지정을 목표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24.4월)

※ 「지역소멸대응 관광산업진흥협의체」(문체부 2차관 주재)를 통한 제도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지속 점검

③ (정주인구)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28개 → 66개) 및 쿼터
(1,500명 → 3,219명) 확대

→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비자 신청접수·발급 등 신속 집행,
비자 발급 요건 개선 및 쿼터 확대 등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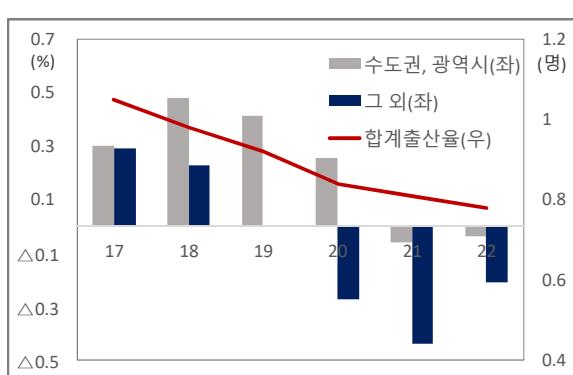
순 서

I. 추진배경	1
II.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	4
1.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4
2. [방문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7
3. [정주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9
III. 향후 계획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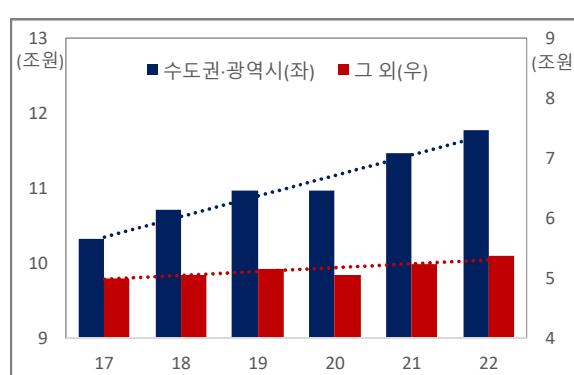
I . 추진배경

- (현황)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 심화
 - * 총인구(천만명) : ('19) 5,178 → ('20) 5,183 → ('21) 5,174 → ('22) 5,169
- 지방의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 초래

【 지역간 인구증가율 격차 】



【 지역간 평균 GRDP 격차 】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특단의 인구감소대책이 시급

- (그간의 대응)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21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22년), 특별법 제정('23.6월) 등을 통해 지원 기반을 구축
 - *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감소지수에 기반해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 발표(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제9호, 행안부)
 - **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10년간('22~31년) 연 1조원의 재정 지원
- 보육 · 교육 · 의료 · 주거 등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 ·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경제활력 도모*
- * (특례) 국공립어린이집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학교통합 · 방문진료 비용지원 등 (취득·재산세) 창업·이전기업에 5년간 100% 감면 (법인·소득세) 이전기업에 10년간 100% 감면
- 최근에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을 수립('23.12월)하여 규제특례* 확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 등 지원 강화 모색
 - * 확대목표(누계): ('23) 36개, ('24) 70개, ('25) 110개, ('26) 150개
 - ** 지자체·민간주도 지역개발을 위해 정부·지방소멸대응기금·산은이 출자한 펀드(3,000억원 규모)

- (3종 프로젝트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반 하에 실질적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수립(‘24년 경정)

-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 확대에 착안하여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방안 마련

* 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또한 방문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소비 및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도 고려

* 정주인구 1명 감소에 따른 소비감소를 관광객 약 41명이 대체가능(‘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아울러 외국인 인력 유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인력부족 애로 해소 및 정주인구 증대 방안도 강구

【 '24년 경제정책방향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주요내용 】

- | |
|---|
| ❶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보유 ·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❷ (방문인구) 지정절차 · 지정규모 등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허용하고, 관광단지 혜택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혜택도 추가 부여 |
| ❸ (정주인구)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로 외국인 유입 지원 |

- (프로젝트 구체화) 3종 프로젝트의 본격추진을 위해 지자체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실행방안 구체화

- 지원요건 · 적용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 법 개정 등 조치계획 수립, 지자체 수요조사에 기반한 후보사업 발굴 등 포함

- | |
|--|
| → 생활·방문·정주인구 유입 촉진으로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구체적 실행방안 추진 |
|--|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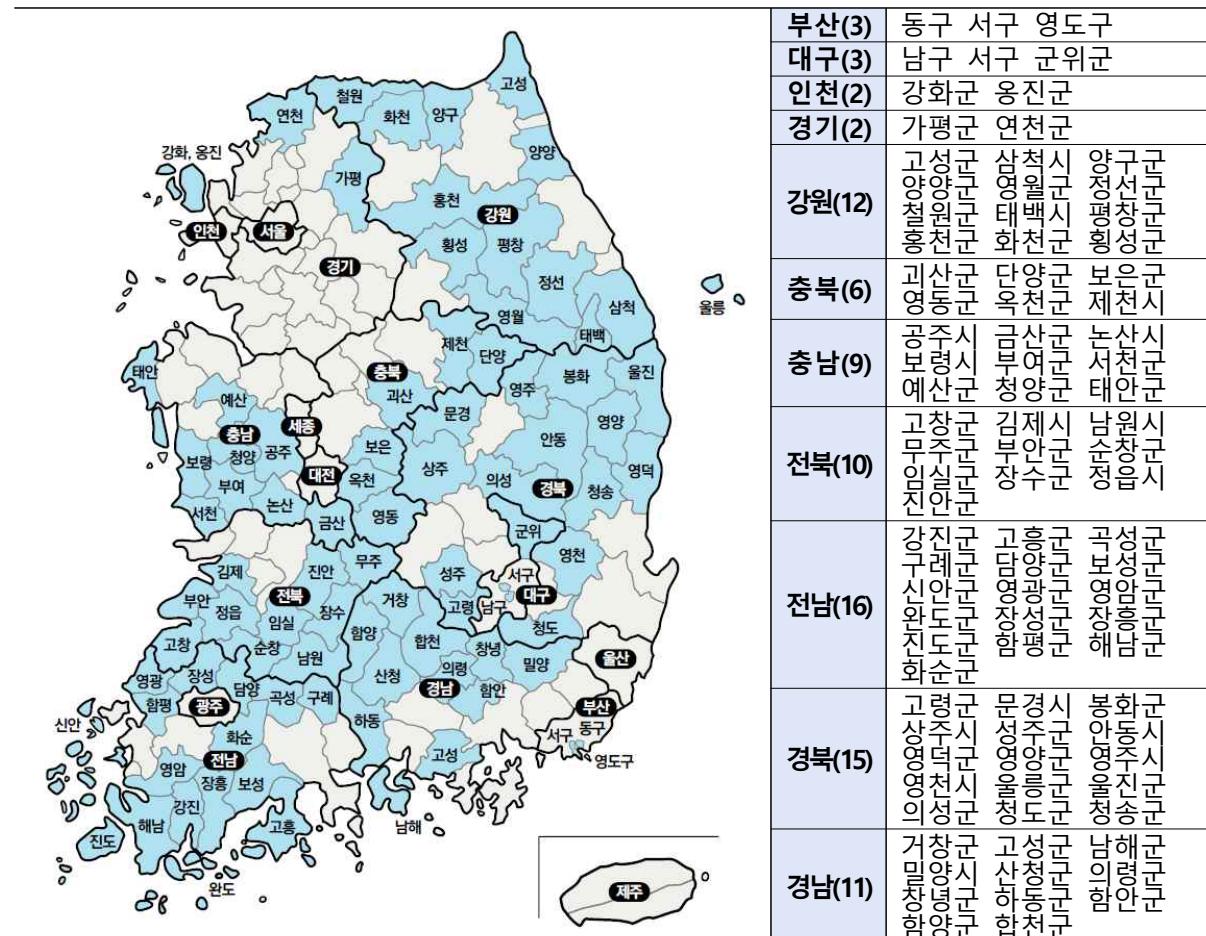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 현황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21.10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5년마다 재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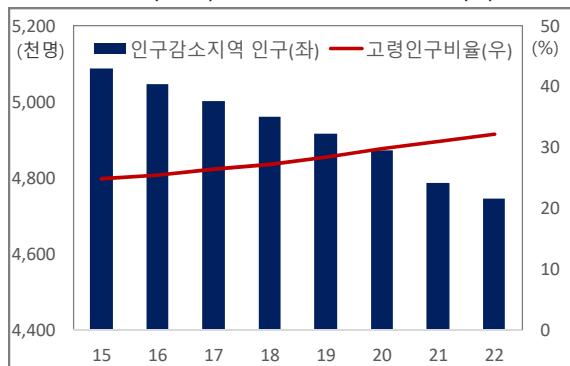
○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한 인구 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지정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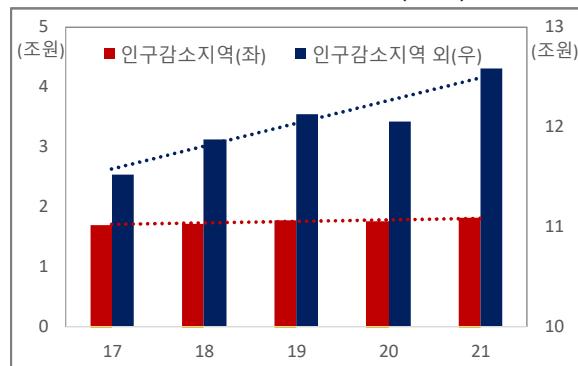


□ (동향)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고령인구 비중은 높아 지역 활력 저하,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과 경제편차도 심화되는 양상

【 인구(천명) 및 고령인구비율(%) 】



【 시군구 평균 GRDP(조원) 】



II.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1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 ◇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필요 → 생활인구 확충의 핵심요소가 주거지인 만큼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 도모
- ▶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

- (주요내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内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 주거지가 휴양, 관광, 워케이션 등의 핵심인 만큼 주택구입 부담 경감시 생활인구 확충 가능

- ① (세컨드 홈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中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

*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 향후 인구감소지역 변경,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 가능

- ② (주택요건) 특례지역 内 주택 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24.1.4일('24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시점) 이후 취득분

*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상당

- ③ (소유주요건)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조치계획)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24년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

- (종부세·양도세)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24.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4.4월)
-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4.6월)하여, '24년 과세분부터 특례 적용(과세기준일 : '24.6.1일, 부과 : '24.7·9월)

【 세컨드 홈 특례 적용여부 】

특례 비적용지역	전체주택	세컨드 홈 특례지역	기존 주택	신규 주택	적용여부
비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세컨드 홈 특례지역 (A)	세컨드 홈 특례지역 (B)	특례 비적용지역	+ 세컨드 홈 특례지역	⇒ 적용
			특례지역 A	+ 특례지역 B	⇒ 적용
			특례지역 A	+ 특례지역 A	⇒ 미적용
			세컨드 홈 특례지역	+ 특례 비적용지역	⇒ 미적용

※ 적용사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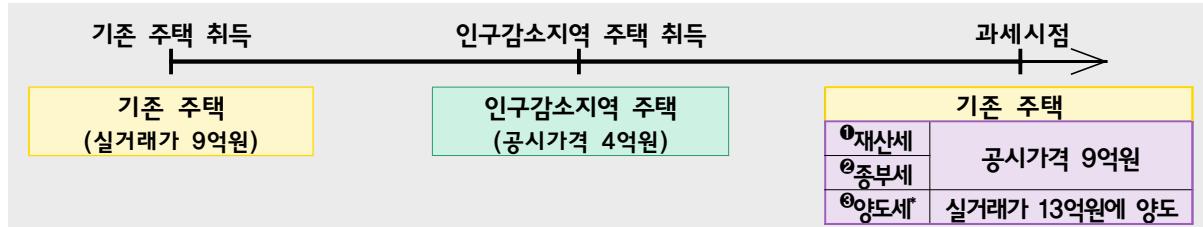
- 수도권 12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금년 5월 인구감소지역 충북 B군에 주택(공시가격 4억) 구입한 경우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인정
- 인구감소지역 경북 C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D씨가 동일 C군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D씨는 1세대 2주택자로 취급(세컨드 홈 특례 적용 x)
- 인구감소지역 전남 E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F씨가 바로 옆에 있는 전남 G군(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F씨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인정

□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 内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 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 예상

【 세제별 세컨드 홈 지원 특례 】

재산세	▶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Delta 0.05\%$ 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적용
종부세	▶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양도세	▶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상세내용 참고2)】



* 기존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경우(고령자, 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

- (세부담 경감)

- (재산세) <現> 305만원 → <改> 211만원 : $\Delta 94\text{만원}$
- (종부세) <現> 75만원 → <改> 4만원 : $\Delta 71\text{만원}$
- (양도세) <現> 8,551만원 → <改> 22만원 : $\Delta 8,529\text{만원}$

참고 2

세컨드 홈 세제특례에 따른 세부담 변화(예시)

※ 가정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신규 취득시

▶ 기존 1주택 : 취득가액 9억원, 양도가액 13억원(공시가격 9억원)

▶ 신규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 공시가격 4억원

▶ 만 65세 이상, 기존 주택 30년 보유·거주(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

재산세	□ 기존 1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		→	□ 세부담 변화	
	현행	개정		기존 1주택	신규 1주택
	▶ 기본 세율 적용	▶ 특례세율 적용 (과표구간별 △0.05%p 인하)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229만원	76만원
	305만원	211만원		△ 94만원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	□ 세부담 변화	
	현행	개정		75만원	4만원
	▶ 기본공제한도 9억원 적용	▶ 기본공제한도 12억원 적용		▶ 세액공제 미적용	▶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75만원	4만원		△ 71만원	
양도소득세	□ 기존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	□ 세부담 변화	
	현행	개정		8,551만원	22만원
	▶ 기본 세율 적용	▶ 비과세 한도 12억원 적용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30%)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80%)
	8,551만원	22만원		△ 8,529만원	

2 [방문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 ◇ 관광객 등 방문인구 확대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나 기존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관광인프라 개발에 한계
→ 관광단지 규모·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 및 방문인구 확대, 지역 수요에 기반한 후보지 사전발굴로 근거규정 완비시 신속한 사업 추진

□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 확충

① (지정요건)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 대폭 축소 (최대 1/10),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

* 규모 : (기존) 50만m² →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m²~30만m²
시설 : (기존) 3종류 이상 구비 → (개선)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

② (지정권자) 기존 시·도시자가 지정·승인하던 관광단지 지정 권한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

③ (적용지역) 인구감소지역 中 시·군 지역

④ (사업 후보지)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 자체 수요에 기반해 7개 시·군, 10개 사업(사업비 1.4조원 규모) 우선지정 추진

【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총 1.4조원 규모)】

- ▶ 제천시(2개소) :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27),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26)
- ▶ 단양군(2개소)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26),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28)
- ▶ 고창군(1개소) : 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29) / ▶ 고흥군(1개소) : 태양의 섬 개발(~'25)
- ▶ 영주시(1개소) :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29) / ▶ 하동군(1개소) : 교육 융합형 관광단지 개발(~'25)
- ▶ 남해군(2개소) :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조성(~'26),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27)

⑤ (적용혜택)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¹⁾에 더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혜택²⁾ 추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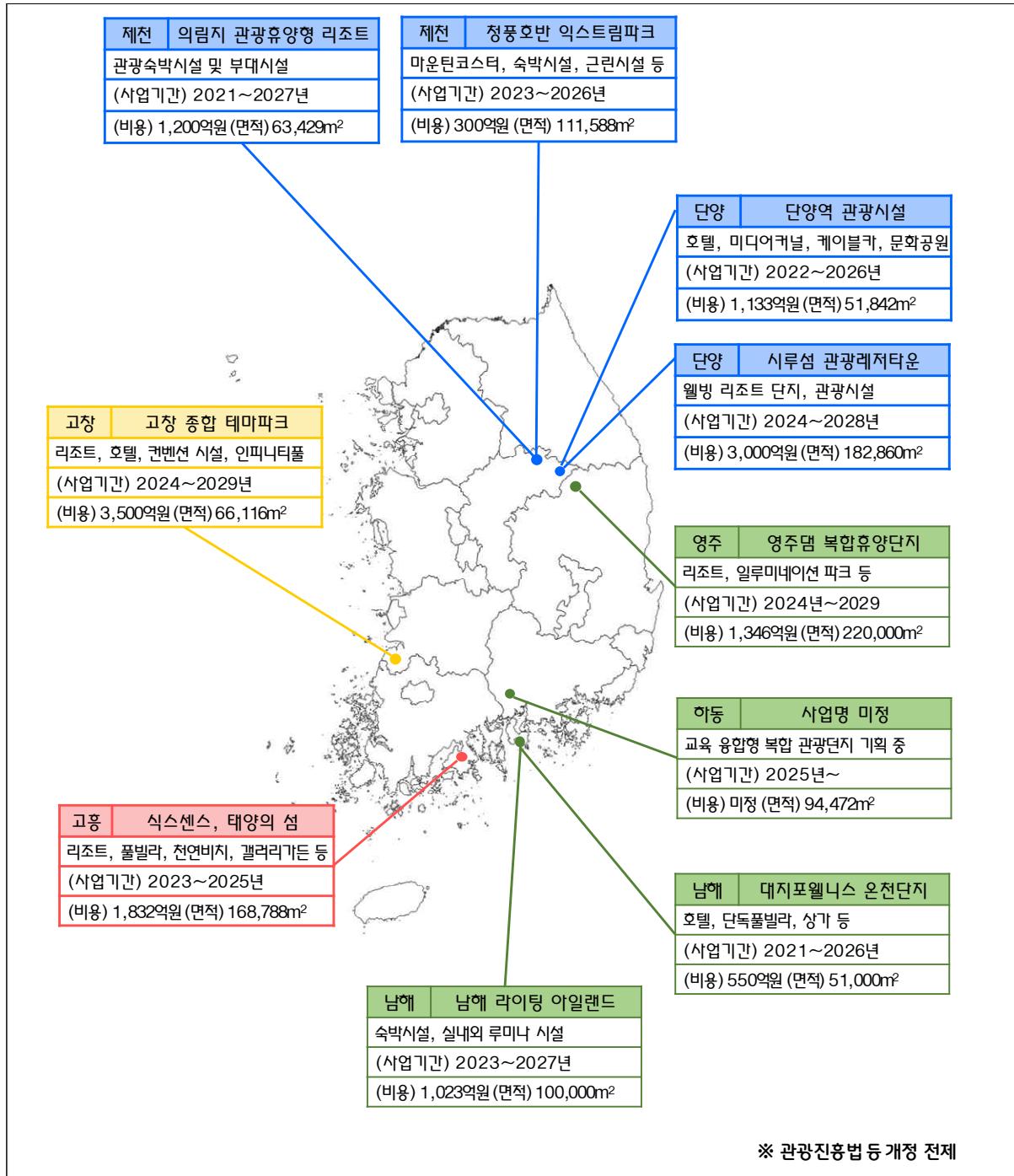
1)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
2) 관광기금 응자 우대(최대△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

□ (조치계획) '25.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법령 정비

-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24.4월) 및 하위 법령 정비('24.下)

□ (기대효과) ①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②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③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 가능

【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 계획 : 10개소 조성 계획, 총 1.4조원 규모 】



3 [정주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 ◇ 지역 일손 부족에 따라 지자체에서 외국인 등 인력유입 요구 증대, 인구감소 시대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한 산업·경제 인력확보 필요
→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발급으로 우수인력 유입 촉진

- (주요내용)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 확대

*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발급

- (참여지역) '23년 28개에서 '24년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

- (쿼터) '23년 1,500명에서 '24년 3,291명(약 2.2배)으로 확대

- (기대효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현재 법무부에서 지자체별 쿼터 분배 완료('24.1월), 3월부터 지자체에서 참여 외국인 모집중으로 '24년도 비자발급 지자체 추천인원은 80여명, 추천 진행 중

【 '24년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구분	대상지역	배정인원	구분	대상지역	배정인원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120	충남	공주·보령·논산시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군	488
대구	서구, 남구	70	전북	정읍·남원·김제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	703
경기	연천·가평군	120	전남	곡성·장흥·보성·고흥·해남·영암군	425
강원	횡성·고성군	210	경북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시, 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군	700
충북	제천시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	205	경남	밀양시,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250

III. 향후계획

- ◇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 추진
- (인구감소지역 전반)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 및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 제고
 - (기준 정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26년)에 맞춰 지표 보완 및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 추진
 - (지원 강화) 규제특례를 발굴 및 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 강화
- * 지역 맞춤형 사업발굴 지원, 매뉴얼 마련, 지자체 매칭 사업 확대 등
- (3종 프로젝트) 차질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 모색
 - (세컨드 홈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 지역 및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 논의
 - 지방시대위원회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과제 등 지속 발굴
 - (소규모 관광단지 활성화)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지속 발굴('24.4월~),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수렴
 - 「지역소멸대응 관광산업진흥협의체」(문체부 2차관 주재)를 통한 제도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점검
 - (지역특화형비자) 차질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 및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등 추진
 - 사업시행 결과 및 지자체 수요 등을 바탕으로 지역특화형비자 제도 지원요건 개선, 발급 확대 등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